

● 제290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145)**

**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(1146)**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1. 2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145,1146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5)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19. 10. 16.
- (3) 회 부 일 : 2019. 10. 22.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6)

- (1)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(2) 제 출 일 : 2019. 10. 16.
- (3) 회 부 일 : 2018. 10. 22.

2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5)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여성관련시설 이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6)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5)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.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6)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.

4. 참고사항

가.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5)

- (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(2) 예산조치: 협의완료
- (3) 기 타
 - (가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(나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결과: 의견없음
 - (다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나.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146)

- (1)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등
- (2) 예산조치: 협의완료
- (3) 기 타
 - (가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 - (나) 입법예고(2019. 9. 25. ~ 10. 15.)) 결과: 의견없음
 - (다)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의안번호 1145번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및 의안번호 1146번 「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¹⁾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로페이를 결제시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임.

2 주요사항 검토

□ 제로페이 이용자 기한 연장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¹⁾, 지방자치단체는 공

1)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

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,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
-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96회 임시회(2019.4.30. 본회의 의결)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민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정비율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감면의 대상과 내용은 각각 시립여성발전센터 5개소의 이용료 10%이내,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30% 이내로 규정한 바 있음.

구분	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	「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감면대상 시설	시립여성발전센터 5개소	서울상상나라
감면내용	이용료의 10%이내	입장료의 30%이내

- 개정안은 제로페이 결제시 이용료나 입장료의 감면해주는 기한을 2019년 말에서 2020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로페이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건임.
- 서울연구원²⁾에 따르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지원사항 1위는 결제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으로 나타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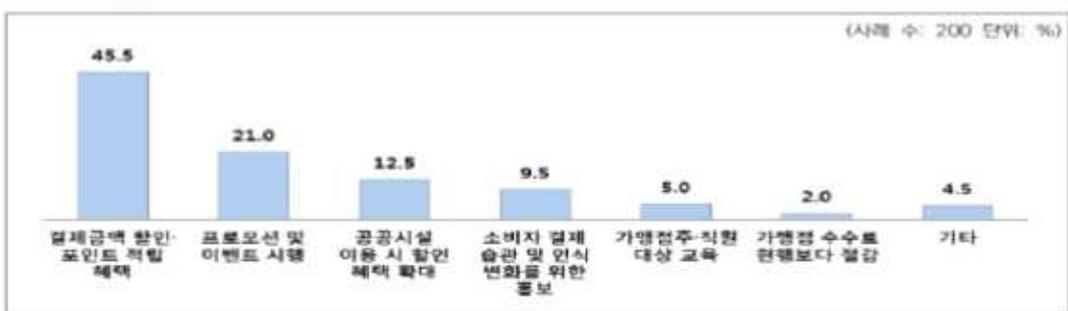
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2) 출처: 「제로페이, 소비자에게 실질 혜택 제공하고 사용처 확대 노력·사용 편의성 증진 필요」 서울연구원, 2019

바, 개정안에 따라 제로페이 결제 시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시민의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음.

<소비자가 원하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사항>



- 한편,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반이 제출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실적을 살펴보면, 2019년 8월말까지 104개 시설 총 114,151건의 제로페이 결제가 이루어져 금액으로는 총 5억 원의 할인이 발생하였으며, 시민들의 제로페이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>

(단위 : 천건, 백만원)

구분	계		5월		6월		7월		8월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전체결제(A)	2,010	28,341	482	7,489	472	6,451	483	7,164	573	7,237
제로페이(B)	114	4,141	28	927	31	832	23	1,036	32	1,346
이용률(B/A)	5.8%	12.4%	5.8%	12.4%	6.7%	12.9%	4.8%	14.5%	5.5%	18.6%
할인금액	500		117		106		120		157	

- 다만, 동 개정안 대상 시설인 서울상상나라의 제로페이 결제실적을 살펴보면, 930건 927만 원으로 전체 공공시설 결제건수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은 1.6%로 나타났는데, 이는 서울시 전체 제로페이 결제 비율의 평균(14.6%)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임.

〈서울상상나라의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 실적〉

(단위 : 건, 천원)

조례명	시설수	제로페이 결제			제로페이 할인	
		건수	금액	비율	건수	금액
총계	116	114,156	4,140,851	14.6	110,366	500,719
서울상상나라 운영예 관한 조례	1	930	9,272	1.6	848	2,509

주 : 비율 =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/ 시설별 전체 결제액 × 10

- 또한 여성발전센터 5개소의 경우, 제로페이 온라인시스템 구축 미비로 인해 제로페이 결제실적의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동 개정안에 따른 제로페이 감면 기간의 연장조치가 제로페이 결제 이용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결제시, 시립시설의 이용료나 입장료를 2019년 말까지 감면토록 하던 것을 2020년 말까지 그 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, 제로페이

이용시 할인혜택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로페이 이용률 제고하여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다만 금번 개정안에 따른 상상나라나 여성발전센터의 경우, 여타 공공시설 제로페이 결제율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 마련이라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임.

여성발전센터 제로페이도입 지연사유 및 향후계획

〈19. 11. 6. 여성일자리팀〉

여성발전센터 제로페이 온라인 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제로페이추진반(금융결제원) 프로그램 제공이 지연됨에 따라 제로페이 온라인시스템 구축기간이 연장되었으며, 제로페이 할인은 '19년 12월 실시할 계획임

추진개요

- 대 상 : 여성발전센터 5개 기관
- 방 법 : 온라인을 통한 제로페이 결제 시 이용료 등 할인(4%)
- 할인가간 : '19.12월
- 추경예산 : 20백만원(여성발전센터 수입보전액) ※ 조례 개정 : '19.5월

지연사유

- 제로페이추진반(금융결제원) 온라인 프로그램 제공 지연으로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결제시스템 구축이 당초 7월말에서 10월말로 지연됨
 - 금융결제원 프로그램 제공 지연 : '19.4월^{지연} → '19.5월^{지연} → '19.8월말 이후
 - ※ 제로페이 도입관련 회의 시 조기제공 요청함(4~5월)

향후계획

- 여성발전센터 수강료 결제는 분기단위로 진행되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이 10월말에 구축되어 제로페이 이용할인 실적이 없으며, 실제 이용료 할인은 '19.12월에 실시할 예정임
 - 수강료 결제 : 매분기 전월 수강신청(예. '20년 1분기(1~3월) 수강료 강좌 결제 '19년 12월)
 - ※ 현재 제로페이 온라인 시스템 결제는 가능하나 '19년 4분기 수강신청기간이 9월 종료됨

붙임 2 : 조례·규칙·지침별 제로페이 할인 공공시설 결제 실적

□ 총괄 (2019.4~8월)

(단위 : 건, 천원)

연번	조례명	시설수	제로페이 결제			제로페이 할인	
			건수	금액	비율	건수	금액
총계		116	114,156	4,140,851	14.6	110,366	500,719
1	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27	32,554	3,592,336	23.0	29,281	382,035
2	도시공원조례	2	61,747	195,186	8.1	61,747	83,651
3	장사등에 관한 조례	3	330	123,118	3.6	370	6,822
4	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	3	288	49,293	14.1	284	2,490
5	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	14	733	26,146	1.6	709	1,554
6	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	1	402	17,741	5.7	401	1,846
7	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	1	930	9,272	1.6	848	2,509
8	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	8	914	6,973	1.0	914	740
9	물재생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 조례	3	1,388	6,322	12.6	1,387	638
10	시립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	1	5,616	6,101	14.0	5,616	2,614
11	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	4	237	5,090	6.0	119	67
12	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	6	482	3,394	0.5	471	347
13	여성관련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					
14	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	1	18	1,625	5.1	18	644
15	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	4	14	178	18.4	14	18
16	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발및 사용에 관한 조례	4	-	-	-	-	-
17	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	8	-	-	-	-	-
18	장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	4	-	-	-	-	-
19	자유시민대학운영에관한규	1	15	381	19.3	14	42
20	보라매병원주차장관리지침	1	10	20	0.0	8	1
21	조례 개정 없이 할인시행	19	8,401	95,145	4.3	8,159	14,699

※ 비율 : 시설별 제로페이 결제액 / 시설별 전체 결제액 × 100

※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는 개정에서 제외